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(최기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0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2일

발 의 자 : 최기찬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장인홍, 경만선, 채유미,
이광성, 양민규, 박순규,
홍성룡, 최웅식, 전병주,
김제리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이 장기화 되면서 학교 내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.
- 특히,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시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 및 적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 및 제 3조)
- 나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- 다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사.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규정함(안 제9조)
- 아.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와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교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감염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.
2. “감염병환자”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

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
2.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
4. 계획 실행에 따른 자원 조달 및 운용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감염병 확산 방지)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,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·휴교·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의 결과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
2.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

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 별 감염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의(Yellow) 단계 : 평생진로교육국장

2. 경계(Orange) 단계 : 부교육감

3. 심각(Red) 단계 : 교육감

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학교보건법」 제14조의3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, 서울특별시,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 위원회 설치·운영비 ≙ 24,0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위원회설치·운영비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1~2025)

- 연간 위원회 설치·운영비 ≙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

≙ 3,900천원 + 900천원

≙ 4,800천원

·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= 구성원 수 × 1인당 회의참석 수당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13명 × 150,000원 × 2회
= 3,900천원

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,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

※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원 1명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총2명을 제외한 13명 지급 전제

·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= 전체 위원 수 ×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15명 × 30,000원 × 2회
= 900천원

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